

의안번호	2219052
의 퇴 인	조계원의원
회 답 일	2026. 6. 23.
추계번호	26C2705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(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의 설립)	국가는 이스포츠 중추국의 위상 제고 및 이스포츠의 교류·보급·홍보·전시 등을 위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이스포츠박물관을 설립함(제1항) 박물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함(제2항) 그 밖에 박물관의 조직과 운영, 설립 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2	안 제17조(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)	박물관의 조성·운영 및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(제1항) 재단은 법인으로 함(제2항)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둠(제3항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(제4항) 1.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. 박물관시설 임대와 관한 사업 3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 4. 이스포츠 보급·홍보에 관한 사업 5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5항) 국가는 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음(제6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의 설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7조(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)	

2. 상세 사유

□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의 설립 및 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(안 제16조 및 안 제17조)

- 개정안에 따라 이스포츠진흥재단과 이스포츠박물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, 재단으로 하여금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서는 이스포츠박물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이스포츠진흥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,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결과 추계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용역 자료나 기본계획 등이 없어 이스포츠박물관 및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정안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재단 사업으로 규정(안 제17조제4항)된 사업 중 관련 예산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

구 분 (안 제17조 제4항 각 호)	현행 사업	수행주체	예산액 (백만원)
1. 박물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	—	—	—
2. 박물관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	—	—	—
3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	· 이스포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	한국콘텐츠진흥원	190
4. 이스포츠 보급·홍보에 관한 사업	· 이스포츠 보급에 관한 사업 — 국내·외 이스포츠 대회 개최 (3,055백만원) * 대통령배 아마추어 및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,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 등 — 이스포츠 기반 구축(7,035백만원) *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,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, 학교 이스포츠 활성화, 이스포츠 지역리그 개최 지원, 아카이브 운영 등	한국이스포츠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	10,090
5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	—	—	—
6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	—	—	—
합계			10,280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(과장 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